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462호 2018. 11. 7. (수)

##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18-1096호 정선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3
- 정선군 공고 제2018-1097호 「정선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19
- 정선군 공고 제2018-1102호 정선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입법예고.....28
- 정선군 공고 제2018-1103호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36
- 정선군 공고 제2018-1113호 정선군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45
- 정선군 공고 제2018-1114호 정선군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  
고.....50
- 정선군 공고 제2018-1148호 산지구분도안 공고.....52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감사실 (전화:560-2213, FAX:560-2592)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18-1096호

**정선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0월 26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 기금의 재원 추가, 기금의 용도 규정, 회계공무원 명칭 수정 등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조문을 개정하고
-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조문개정  
(안제3조, 안제4조, 안제6조제1항, 안제7조제1항, 안제11조, 안17조제1항, 안제6조제3항)  
- 법령과 일치하도록 기금의 재원 추가, 기금의 용도 규정, 식품진흥기금심의 위원회 명칭 수정, 식품진흥기금위원회 심의 사항 추가, 회계공무원 명칭 수정, 근거규정 수정, 기금운영 시 민간전문가 참여보장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반영  
(안제2조, 안제6조제3항, 안제7조제3항, 제17조제2항)

3. 입법예고 기간 : 2018. 10. 26. ~ 2018. 11. 16.

4. 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참조: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녹송로 33 정선군보건소

○ 전 화: 033-560-2863

○ 팩 스: 033-563-4000

○ 이 메 일: nutri@korea.kr

○ 홈페이지: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붙임]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선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모 범업소” 를 “모범업소” 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개·보수” 를 “개수·보수” 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정선군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법 제65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용자 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3.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4.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줄 수 있다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 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용자사업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 기능 식품에 관한 사업

제6조제1항 중 “심의위원회” 를 “운용심의위원회”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중에서” 를 “위원 중” 으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를 “사

람 중” 으로, “위촉한다” 를 “위촉하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1.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 2. 기금운영의 성과분석

제7조제3항 중 “관하여 필요” 를 “관” 으로 한다.

제11조 중 “기금운 용관은 보건소장으로 기금출납원” 을 “기금지출관은 보건소장으로 기금출납공무원” 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 을 “지방회계법”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아니한” 을 “않은” 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모범음식점"이라 함은 법 제 47조제1항에 따라 정선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가 <u>모범</u> <u>업소</u>로 지정한 일반음식점을 말한다.</p> <p>2. (생 략)</p> <p>3.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 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 장의 수리, <u>개·보수</u> 및 영업 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 -----.</p> <p>1. ----- ----- ----- <u>모범업</u> <u>소</u>----- -----.</p> <p>2. (현행과 같음)</p> <p>3. ----- ----- ----- <u>개수·보수</u> ----- ----- -----.</p>
<p>제3조(기금의 재원) 정선군 식품 진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p>1. <u>법 제65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u></p> <p>2. <u>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u></p> <p>3. <u>그 밖의 수입금</u></p>	<p>제3조(기금의 재원) 정선군 식품 진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p>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p> <p>2. 법 제65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p> <p>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p> <p>4. 그 밖의 수입금</p>
<p><u>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u> <u>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u></p>	<p><u>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u> <u>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용자사업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사업</u></li> <li>2. <u>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u></li> <li>3. <u>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과 향토음식의 발굴·육성·계승을 위한 사업 지원</u></li> <li>4. <u>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u></li> <li>5. <u>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의 지원</u></li> <li>6. <u>부정·불량식품 및 퇴폐·변태영업 신고자에 대한 보상</u></li> <li>7. <u>그 밖에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 에서 정하는 사업</u></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영업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용자 사업</u></li> <li>2. <u>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u> <u>(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u></li> <li>3. <u>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u></li> <li>4. <u>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줄 수 있다</u></li> <li>5. <u>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u></li> <li>6. <u>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u></li> <li>7. <u>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용자사업</u></li> <li>8. <u>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u></li> </ol>
---	---

	관한 사업
<p>제6조(기금심의위원회)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선군식품진흥기금 <u>심의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생략)</p> <p>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u>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u> 군수가 임명 또는 <u>위촉한다.</u></p> <p>1. 2. (생략)</p> <p>④·⑤ (생략)</p> <p>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u>기금운용계획안</u></p> <p>2. <u>기금결산보고안</u></p>	<p>제6조(기금심의위원회) ①----- ----- ----- <u>운용심</u> <u>의위원회</u>-----.</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u>위원 중</u> ----- ----- <u>사람 중</u> ----- ----- --- <u>위촉하며, 기금운용 또는</u> <u>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u> <u>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u> <u>1이상 포함되도록 한다.</u></p> <p>1. 2. (현행과 같음)</p> <p>④·⑤ (현행과 같음)</p> <p>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p> <p>1. <u>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및</u> <u>결산보고서의 작성</u></p> <p>2. <u>기금운영의 성과분석</u></p>
<p>3. (생략)</p> <p>② (생략)</p> <p>③위원회의 운영에 <u>관하여 필요</u> <u>한 사항은</u> 규칙으로 정한다.</p>	<p>3.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관</u>----- -----.</p>

<p>제11조(회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u>기금 운용관은 보건소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위생담당주사로 한다.</u></p> <p>제17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 <u>지방재정법</u>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 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준용한다.</p> <p>②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u>아니한</u> 사항에 대하여는 「정선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p>	<p>제11조(회계공무원) ----- ----- <u>기금지출관</u>은 보건소장으로 <u>기금출납공무원</u>-----.</p> <p>제17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 <u>지방회계법</u> ----- ----- ----- -----.</p> <p>②----- ----- <u>않은</u> ----- ----- -----.</p>
--	--

## 관련법령 발췌

## □ 「식품위생법」

## 제65조(협회의 사업)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1. 식품산업에 관한 조사·연구
2. 식품 및 식품첨가물과 그 원재료(原材料)에 대한 시험·검사 업무
3. 식품위생과 관련한 교육
4. 영업자 중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운반·판매 및 보존하는 자의 영업시설 개선에 관한 지도
5. 회원을 위한 경영지도
6. 식품안전과 식품산업 진흥 및 지원·육성에 관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의 부대사업

## 제89조(식품진흥기금)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 3. 13.>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0.3.26>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용자 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3.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이하 "영양관리"라 한다)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4.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용자 사업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62조(기금의 운용)

-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계획에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드는 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금의 용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금계정을 설치할 은행을 지정하고, 지정한 은행에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을 구분하여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금재무관에게 지출원인행위를 하도록 하는 경우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정선군 공고 제2018-1097호

「정선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0월 26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 상위법령 근거규정에 맞게 조문을 수정하고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띄어쓰기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근거규정에 맞게 조문 수정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
-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 띄어쓰기 반영  
(휴게음식점영업등 → 휴게음식점영업 등)

3. 입법예고 기간 : 2018. 10. 26. ~ 2018. 11. 16.

4. 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참조: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녹송로 33 정선군보건소
- 전 화: 033-560-2010
- 팩 스: 033-563-4000
- 이 메 일: chlalgid@korea.kr
- 홈페이지: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붙임]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정선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휴게음식점영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을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휴게음식점영업 등”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영업장소와 붙임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 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u>휴게음식점영업등</u>" 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붙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 략)</p> <p>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u>도로법 시행규칙</u>」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p> <p>3. (생 략)</p> <p>4. 그 밖에 정선군수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u>휴게음식점영업등</u>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그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p>	<p>제2조(영업장소와 붙임서류) --- ----- ----- ----- --- "<u>휴게음식점영업 등</u>"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 ----- - 「<u>도로법 시행규칙</u>」 제26조 제3항----- --</p> <p>3. (현행과 같음)</p> <p>4. ----- ----- <u>휴게음식점영업 등</u>----- ----- ----- ----- -----</p>

## 관련법령 발췌

## □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도로점용허가 신청 등)

- ① 법 제61조제1항 전단 및 영 제54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 ② 법 제6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르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르되, 도로점용허가 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도면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영 제54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은 별지 제27호서식과 같고, 도로점용허가 내용의 공고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르며, 도로점용허가 대장은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④ 영 제54조제4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사항을 적은 표지를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내걸어야 한다.
- ⑤ 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정선군 공고 제2018-1102호

### 정선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8년 10월 25일

정 선 군 수

#### 1. 개정이유

- 「민법」상 손해배상은 통산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는데, 「정선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23조제3항 손해배상금을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민법」에 대한 특례 규정이므로 삭제처리하고, 법률에 따라 합리적인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함

#### 2. 주요내용

- 도로명주소로 변경(안 제2조 별표1)
  - 읍면 종합복지회관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변경
- 복지회관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조문을 법률에 맞게 개정(안 제23조)
  - 손해배상액을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한 규정삭제
- 그 밖에 회관의 운영 실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띄어쓰기를 바르게 함(안 제1조, 제4조, 제5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4조, 제26조)

#### 3. 개정 조례안 : 별첨

#### 4. 입법예고 : 2018. 10. 26 ~ 2018. 11. 15

## 5.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4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참조: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정선군청 주민생활지원과

- 연락처 : 전화(033-560-2314), 팩스(033-560-2588)
- 주 소 : (23161)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주민생활지원과

##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정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 정선군 조례 제 호

## 정선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한 다.” 를 “한다.” 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로으로 구성한다.” 를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2호 중 “활용방안강구” 를 “활용방안 강구” 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정선군 재무회계규칙」” 를 “「정선군 재무회계 규칙」” 으 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명” 을 “처분”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명령” 을 “처분” 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 를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로 한다.

제23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24조제2항 중 “할때에는” 를 “할 때에는”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맞지않아” 를 “맞지 않아” 로 한다.

제26조 중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정선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 준용한다.” 를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정선군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 로 한다.

별표 1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읍면종합복지회관 명칭 및 위치

번호	회 관 명	위 치	비 고
1	고한읍종합복지회관	정선군 고한읍 고한2길 1	
2	사북읍종합복지회관	정선군 사북읍 사북2길 16	
3	신동읍조동종합복지회관	정선군 신동읍 새골길 30	
4	신동읍예미종합복지회관	정선군 신동읍 예미1길 11	
5	화암면종합복지회관	정선군 화암면 그림바위길 40	
6	남면종합복지회관	정선군 남면 칠현로 80	
7	여량면종합복지회관	정선군 여량면 서동로 2885	
8	아우라지종합복지회관	정선군 여량면 아우라지길 24	
9	북평면종합복지회관	정선군 북평면 북평6길 35	
10	임계면종합복지회관	정선군 임계면 서동로 4584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면종합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u>한 다.</u></p>	<p>제1조(목적) ----- ----- ----- ----- ----- <u>한 다.</u></p>
<p>제4조(구성) ① (생 략)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u>구성한다.</u> ③·④ (생 략) ⑤제2조의 회관이 소재한 해당지역 <u>정선군의회의원은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u></p>	<p>제4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u>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u> ③·④ (현행과 같음) <u>&lt;삭 제&gt;</u></p>
<p>제5조(임무) (생 략) 1. (생 략) 2. 회관의 효율적 <u>활용방안강구</u> 3. (생 략)</p>	<p>제5조(임무)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회관의 효율적 <u>활용방안 강구</u> 3. (현행과 같음)</p>
<p>제15조(회계 및 운영) ①회관의 수입 과 지출은 「정선군 재무회계규칙」에 의하여 회계관리를 한다. ②·③ (생 략)</p>	<p>제15조(회계 및 운영) ①----- ----- 「정선군 재무회계 규칙」에 의하여 회계관리를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p>

제17조(허가의 취소등) ①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장은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제한, 정지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조례, 규칙등에 위반하거나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 3. 4. (생략)

② (생략)

제18조(사용료의 결정) ①·② (생략)

③1년의 기간으로 사용 허가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재정법」 및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사용료를 결정한다.

제23(손해배상) ①·② (생략)

③제2항의 손해배상액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 (생략)

제24조(위탁관리) ① (생략)

②제1항에 의하여 위탁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한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

제17조(허가의 취소등) ① -----

-----

-----

----- 처분할

-----.

1. -----

----- 처분에 위반하였을 때

2. 3. 4. (생략)

② (생략)

제18조(사용료의 결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정선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

-----.

제23(손해배상) ①·② (현행과 같음)

<삭제>

④ (현행과 같음)

제24조(위탁관리) ① (생략)

② -----

할 때에는 -----

-----.

③ -----

-----

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다만, 채산성이 맞지않아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은 부족 액을 군수에게 지원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정선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  
----맞지 않아-----  
-----  
-----.

제26조(준용) -----  
-----  
-----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정선군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

## 관계법령 발췌

 도로명주소법

제21조(도로명 주소의 사용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법인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도로명주소를 표시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부상의 등록기준지 표시 또는 주소 표시
2. 각종 인·허가 등 행정처분시 주소표시
3. 공공기관 주소의 위치표시
4. 공문서 발송시 위치표시
5. 위치안내표시판 제작과 위치표시 및 위치안내
6. 인터넷 홈페이지의 위치안내
7. 그 밖에 주소 및 위치표시와 관련된 사항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정선군 공고 제2018-1103호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8년 10월 25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그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가 직접 이를 확인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별지 서식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사항을 추가하여 민원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구비서류의 최소화를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사항을 추가(안 시행규칙 제2조, 별지 제2호 서식)

3. 개정 조례안 : 별첨

4. 입법예고 : 2018. 10. 26 ~ 2018. 11. 15

5.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4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참조: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정선군청 주민생활지원과

- 연락처 : 전화(033-560-2314), 팩스(033-560-2588)
- 주 소 : (23161)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주민생활지원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정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규칙 제 호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발췌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처리할 때에 민원인에게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민원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복수로 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본과 함께 그 사본의 제출을 허용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처리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그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가 직접 이를 확인·처리하여야 한다.

1. 민원인이 소지한 주민등록증·여권·자동차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公簿) 또는 행정정보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3.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④ 행정기관의 장은 원래의 민원의 내용 변경 또는 갱신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미 제출되어 있는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다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전자정부법」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등(이하 "행정정보보유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등과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 하여금 행정정보보유기관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행정정보 목록을 조사·작성한 내용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표하고, 행정기관등이 공동이용을 필요로 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 ④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정보의 생성·가공·이용·제공·보존·폐기 등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다른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다.
- ⑥ 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 목록의 조사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신청·승인) ① 제37조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행정정보를 이용하려는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와 그 범위, 공동이용의 목적·방식, 행정정보보유기관 등을 특정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공동이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이용의 조건 등을 정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이용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동이용을 신청한 행정정보가 다른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감사원규칙,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만 해당한다)에서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
2. 공동이용을 신청한 행정정보가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동이용할 경우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동이용을 신청한 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이 공동이용하려는 행정정보가 그 신청기관 고유의 업무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공동이용의 목적이나 행정정보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기 전에 행정정보보유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행정정보보유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신청기관이 공동이용하려는 행정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인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

결을 거쳐 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 승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하여 공동이용의 승인을 할 수 있다.

1. 이미 공동이용의 승인을 한 사무에 있어 법령의 제정·개정 등으로 인하여 단순히 그 명칭이나 소관 부서 등이 변경되는 경우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에 올라있는 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필요한 경우

⑥ 행정자치부장관은 공동이용하려는 사무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러 행정기관등이 공통적으로 처리하는 사무인 경우에는 개별 기관이 신청하지 아니하여도 그 사무를 처리하는 모든 기관에 대하여 공동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그 기관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할 권한이 있는 사람

2. 그 기관의 업무담당자에게 행정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권한이 있는 사람

3. 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하는 소관 업무와 행정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있는 사람

정선군 공고 제2018-1113호

### 정선군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보건소 수가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0월 31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상위법령과 부합하도록 법령 개정사항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른 법조항 반영(안 제1조)
  - 나.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발굴된 조문 개정(안 제5조)
    - 상위법령 우선적용 제한 규정 삭제
  - 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안 제9조제1항 2호)
  - 라. 제증명 발급 및 검사 수수료 개정 [별표]
  - 마.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띄어쓰기 정비
3. 입법예고 기간 : 2018. 10. 31. ~ 2018. 11. 21.
4. 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참조: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녹송로 33 정선군보건소
- 전 화: 033-560-2557
- 팩 스: 033-563-4000
- 이 메 일: jjangmi@korea.kr
- 홈페이지: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정선군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붙임]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보건소 수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보건소 수가조례” 를 “정선군 보건소 수가조례” 로 한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 제14조” 를 “「지역보건법」 제25조제2항” 으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월미만” 을 “월 미만” 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아니한” 을 “않은” 으로 한다.

제5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아니한” 을 “않은” 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관계법령” 을 “관계 법령”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도로 징수하지 아니한다” 를 “따로 징수하지 않는다” 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관계법령” 을 “관계 법령” 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진료수가외 제증명발급” 을 “진료수가외 각종 증명발급” 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법정전염병” 을 “감염병” 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정선군보건소 수가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역보건법</u>」 제14조 및 「<u>농어촌 등 보건의료</u>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약제급여·비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의하여 산정하되, <u>원미만</u>은 사사오입한다. 다만, 동 약제급여·비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등재되지 <u>아니한</u>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당해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행정지도 가격을 초과 할 수 없다.</p> <p>제5조(타법령에 의한 수가)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p>	<p style="text-align: center;"><u>정선군 보건소 수가조례</u></p> <p>제1조(목적) ----- 「<u>지역보건법</u>」 제25조제2항 ----- ----- ----- ----- -----.</p> <p>제4조(약가) ----- ----- ----- --- <u>원 미만</u>----- . --- ----- ----- <u>않은</u> ----- ----- ----- -----.</p> <p>제5조(타법령에 의한 수가) ----- -----</p>

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 한다. 다만, 이 조례에 정한 수가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기타수가) 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액에 규정하지 아니한 초과진료비용은 실비수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생략)

제7조(증명발급 및 검사수수료) ①진료목적외 증명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진찰·검사·방사선진단 등은 전액 본인부담금으로 하고 검사내용은 관계법령에 명시된 검사에 의한다

② (생략)

③진료의뢰서의 발급에 따른 수수료는 별도로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 등 관계법령에 검사수수료가 규정된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따라 징수 한다.

⑤ (생략)

⑥증명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진찰·검사·방사선진단 등의 진

----- .

<단서 삭제>

제6조(기타수가) ①-----  
----- 않은  
-----  
----- .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증명발급 및 검사수수료) ①-----  
-----  
-----  
- 관계 법령-----  
-

② (현행과 같음)

③-----  
- 따로 징수하지 않는다.

④----- 관  
계 법령-----  
----- .

⑤ (현행과 같음)

⑥----- 진료수가

<p><u>료수가외 제증명발급 수수료</u>는 제3조 [별표1]에 의하여 징수한다. &lt;신설 200.04.20, 개정 2007.12.27.&gt;</p> <p>⑦ (생략)</p> <p>제9조(사용료와 수수료 감면) ① 군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필요에 의하여 검사시험을 의뢰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료와 수수료를 면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략)</li> <li>2. <u>법정전염병</u>에 필요한 경우</li> <li>3. ~ 10. (생략)</li> </ol> <p>② (생략)</p>	<p><u>외 각종 증명발급</u> ----- ----- . ----- -----</p> <p>⑦ (현행과 같음)</p> <p>제9조(사용료와 수수료 감면) ①- ----- ----- -----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행과 같음)</li> <li>2. <u>감염병</u>-----</li> <li>3. ~ 10. (현행과 같음)</li> </ol> <p>② (현행과 같음)</p>
---	---

## [별표]

## 제 증 명 발 급 및 검 사 수 수 료 (현재조례)

구 분	기 준	수수료(원)	비 고
1. 근로자 건강진단서	1통	500	
2.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	500	
3. 일반진단서	"	500	요양신청용, 병사용상해
4. 특별진단서	"	2,000	진단용
5. 사체검안서	"	5,000	
6. 성별 및 연령감정서	"	2,000	X-선, 간염검사포함.
7. 위생 분야종사자 건강진단서	"	2,000	
8. 사망진단서	"	500	
9. 출생,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	"	500	
0. 기 발급증명서 추가발급	"	300	
1. 1통초과 발급	"	100	
2. 수질검사 수수료	"	23,100	음용수의 수질기준 등에
가. 색 도		1,300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의
나. 탁 도		1,300	규정에 의한(보건사회부령
다. 냄새		1,300	제 871호 91.7.4. “별
라. 맛		1,300	표”)음용수의 음용적부
마. 암모니아성 질소		4,000	판단을 위한 수질검사 항
바. 질산성 질소		4,000	목 및 기준임.
사. 일반세균		4,400	
아. 대장균군		5,500	

## 【별표 1】

## 제 증 명 발 급 및 검 사 수 수 료 (개 정 예 정 안)

구 분	기 준	수수료(원)	비 고
1. 근로자 건강진단서	1통	500	
2.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	500	
3. 일반진단서	"	500	요양신청용, 병사용상해
4. 특별진단서	"	2,000	진단용
5. 사체검안서	"	5,000	
6. 성별 및 연령감정서	"	2,000	X-선, 간염검사포함.
7. 위생 분야종사자 건강진단서	"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으로 정함.
8. 사망진단서	"	500	
9. 출생,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	"	500	
0. 기 발급증명서 추가발급	"	300	
1. 1통초과 발급	"	100	
2. 수질검사 수수료	"	-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가. 색 도		-	[별표]시험수수료 금액표(제7조
나. 탁 도		-	관련)으로 정함.
다. 냄새		-	
라. 맛		-	
마. 암모니아성 질소		-	
바. 질산성 질소		-	
사. 일반세균		-	
아. 대장균군		-	

정선군 공고 제2018-1114호

정선군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0월 29일

정 선 군 수

1. 제안이유

- 가. 정선군 노사민정협의회 구성을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
- 나. 상위법령 상 근거가 없는 협의회의 의결사항 이행여부 점검 결과 공표 조항 삭제

2. 주요내용

- 가. 정선군 노사민정협의회 구성을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안 제5조제1항)
  -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나. 제14조제4항(협의회의 의결사항 이행여부 점검결과 공표) 조항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정선군수(참조 : 지역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우)26130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 3길 21 정선군청 지역경제과
- 전화 : 033-560-2240
- 팩스 : 033-560-2594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15명” 을 “30명” 으로 한다.

제14조제4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협의회 구성)</p> <p>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u>15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③ 생략.</p>	<p>제5조(협의회 구성)</p> <p>① ----- -----<b>30명</b>-----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14조(성실이행의무)</p> <p>①~③ 생략.</p> <p>④ <u>위원장은 협의회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u></p>	<p>①~③ 현행과 같음.</p> <p><u>&lt;삭 제&gt;</u></p>

## 관계법령 발췌

##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조(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역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노사민정으로 구성된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4.16]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다만,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 1명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다. [개정 2012.4.16]

④ 협의회의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신설 2012.4.16]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 고용심의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미 심의한 경우 협의회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4.16]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운영, 하부 협의체 및 사무국의 설치·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4.16]

정선군 공고 제2018-1148호

### 산지구분도안 공고

『산지관리법』 제3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산지구분타당성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한 산지구분도안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산지구분도안 열람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1월 5일

정 선 군 수

1. 공고기간 : 2018. 11. 05. ~ 2018. 11. 19.(14일간)
2. 의견 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3. 열람장소 : 정선군청 환경산림과 산림보호팀(3층)
4. 관계도서 : 게재생략
5. 의견제출 : 공고한 산지구분도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의견 제출기간 이내에 산림청 소관 국유림인 경우에는 정선국유림관리소로 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아닌 경우에는 정선군 환경산림과로 아래사항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공고사항에 대한 권리주장, 의견 및 그 이유를 상세히 기재한 의견서
  - 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다. 의견서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진, 측량도면 등
6. 산지구분도안 공고 및 열람 일정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하며, 단체 또는 개인에게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환경산림과 산림보호팀(☎ 033-560-2425), 정선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 033-560-55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전산지 지정 고시에 따른 의견제출서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주소		

### 의견제출 대상 산지 내역

소재지			지번	지적 (㎡)	면적 (㎡)
시·군·구	읍·면	리·동			

### 의견제출 사유

---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자료 : 의견제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진 등)